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68호

- 2023년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필기시험 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 공고

2023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I 시험일정

□ 시험일자 : 2023. 10. 28.(토)

□ 시험시간

○ 10:00 ~ 11:40(100분간 / 5과목) * 행정7급(공개경쟁)

○ 10:00 ~ 11:00(60분간 / 3과목) * 지도사·연구사, 기술계고(경력경쟁)

※ 수험생은 **08:20부터** 해당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II 시험장소

□ 직류·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붙임」 참고

○ 공개경쟁(행정7급) : 서중, 동중

○ 경력경쟁(지도사·연구사, 기술계고) : 동중

※ 모든 시험장(학교)의 **교내 차량출입이 불가**하며,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및 지인 출입 불가)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은 「붙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수험생 준수사항[일반 준수사항]

-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시험장소·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구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공무원증, 신 여권(주민번호 뒷번호 미기재) 등 인정불가)

※ 응시표 출력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개명자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개명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개명허가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하거나,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연필이나 볼펜 등 사용불가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부주의로 잘못표기(미세한 이중표기, 번짐, 예비표기 등)한 경우에는 답안지 판독이 되지 않거나 중복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답안지의 지정된 기입란 이외에 낙서 및 메모를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온 것만을 사용하며,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수정테이프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 도중 수정테이프를 다른 수험생에게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사용 시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6호, 2023.2.10.)」 제4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순서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목이 있는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입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의 인적사항 및 책형 미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시행본부에 방문하여 답안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당일 모든 학교에 차량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장 부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교통단속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학교)은 금연구역으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편의지원 신청자 제외)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고,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답안지에 안내된 수험생 준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거나,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험생 준수사항을 정독하고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 외에 전라북도 자체출제 문제 및 호남권 공동출제 문제는 비공개 문제로 전량 다시 회수합니다.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퇴실 조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 정답공개(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정답가안 공개 : 2023. 10. 28.(토) 13:00
- 이의신청 기간 : 2023. 10. 31.(화) 18:00까지
- 최종정답 공개 : 2023. 11. 06.(월) 18:00

※ 제4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출제과목

구 분	과 목	비 고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7급)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기술계고)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재배	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를 가지고 귀가 가능)
호남권 공동출제 과목	(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학	비공개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전량 회수)
전라북도 자체출제 과목	(기술계고) 농업생산환경, 환경보건, 공중보건, 축산, 가축사양, 초지 (지도사)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연구사) 작물보호학, 가축번식학,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IV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점 등록기간 : 원서접수일 ~ 필기시험 전일(10.27.(금))까지

○ 등록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OC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V 부정행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위반행위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 위반행위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